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4. 2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4. 10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4. 13.

다. 상정일자: 제23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0.4.21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총무과장 조만호】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·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의 목적 개정(안 제1조)

- 조례의 목적이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을 명시

○ 근무기강의 확립 일부조항 삭제(안 제4조제1항)

- 복무규정 제1조의2(근무기강의 확립) 제1항과 중복

- 출장공무원 규정 삭제(안 제8조)
 - 복무규정 제4조의2(출장공무원)와 중복
- 복장 및 제복 일부조항 삭제(안 제12조제1항)
 - 복무규정 제1조의3(복장 및 복제 등) 제1항과 중복
- 휴가의 종류 규정 삭제(안 제17조)
 - 복무규정 제6조(휴가의 종류) 제1항과 중복
- 공무원 연가일수 규정 삭제(안 제18조)
 - 복무규정 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개정에 따른 삭제
-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 정비
(안 제18조의2)
 - 복무규정 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
- 연가계획 및 허가 일부조항 삭제
(안 제20조제2항, 제5항, 제6항 및 별표5)
 - 복무규정 제7조의11(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) 신설에 따른 삭제
 - 복무규정 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제4항과 중복
 - 복무규정 제7조의3(연가당겨쓰기) 신설에 따른 삭제
-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규정 삭제(안 제21조)
 - 복무규정 제7조의2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개정에 따른 삭제
- 병가 규정 삭제(안 제22조)
 - 복무규정 제7조의5(병가) 신설에 따른 삭제
- 공가 규정 삭제(안 제23조)
 - 복무규정 제7조의6(공가) 개정에 따른 삭제
- 특별휴가 일부조항 삭제 및 개정(안 제24조)
 - 출산휴가에 대한 조항 삭제(제2항)

- 여성보건휴가 및 임신검진휴가에 대한 조항 삭제(제3항)
 -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규정 삭제(제4항)
 - 육아시간 대상 확대 및 단서 신설(제4항)
 - 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휴가에 대한 단서 신설(제5항)
 - 유산·사산휴가에 대한 조항 삭제(제10항)
 - 포상휴가에 대한 규정 정비(제11항)
 -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조건 및 단서 신설(제14항)
- 경조사별 휴가 일수 개정(안 별표3)
 -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, 띄어쓰기 등 정리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·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 관계법령을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 다만, 코로나19 사태에서 감염에 대해 두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주민들의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집행부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 타: 없 음

 처음으로